

대구지방법원 2021. 8. 12 선고 2020가단14289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유한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7. 15.

판 결 선 고 2021. 8. 12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9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C 사이에 2018. 6. 19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C에게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8. 9. 4. 접수 제1402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
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변지영

별지